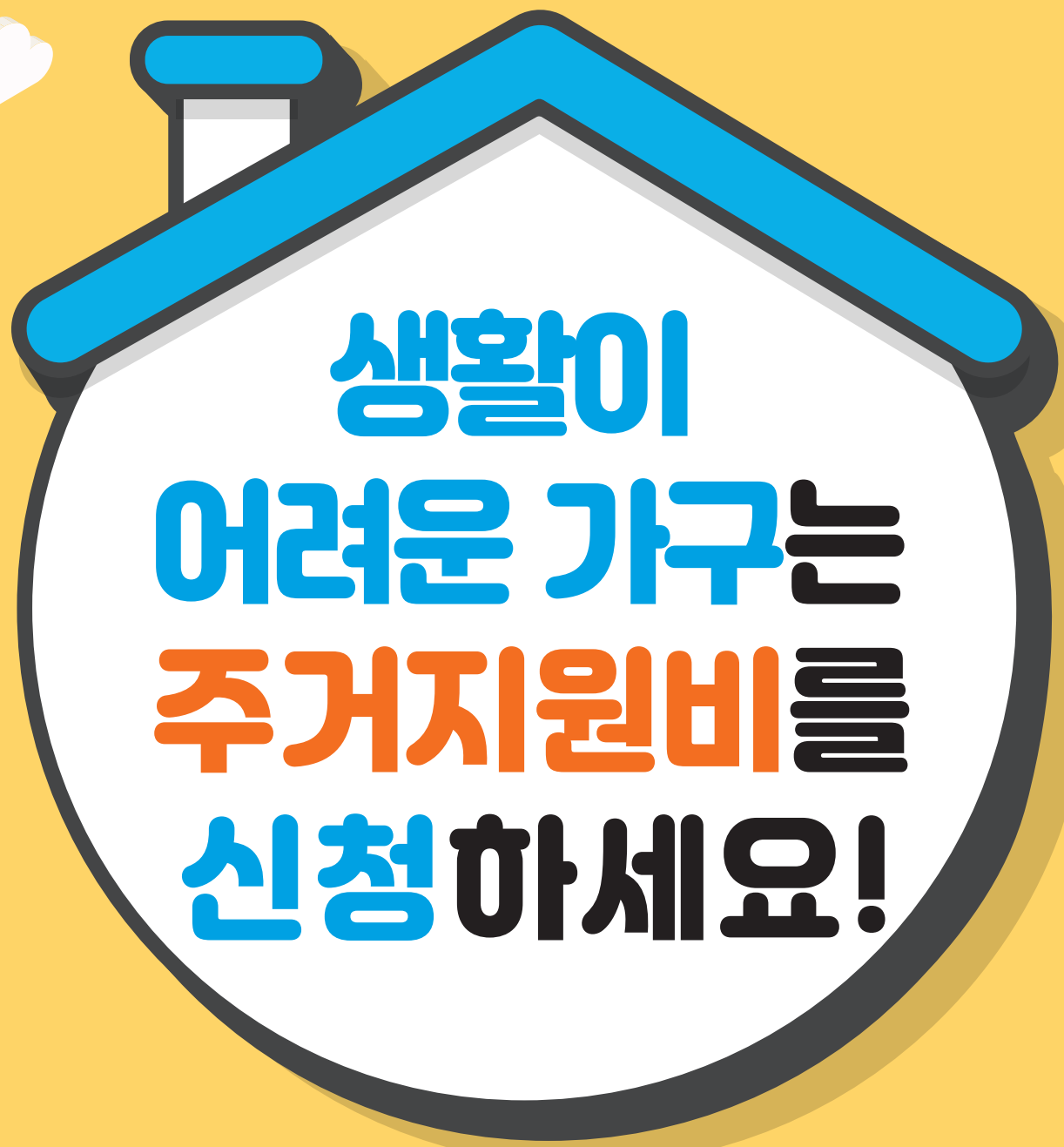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 이 홈 포 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신청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 이 홈 포 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 | |
|----------------------------------|--------------------|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⑥ 통장사본 |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